

④ (승계자)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기본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, 질병, 또는 부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^{*}하다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한 경우

* 「농지법」 제9조에 따른 해당 농지를 완전위탁경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함. 다만, 같은 법 제6호에 따라 일부 위탁하는 경우는 승계의 사유가 될 수 없음.

☞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한 등록자의 (1)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으로 (2)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^{*}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하고 (3) 계속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

* 3개월 미만의 치료를 목적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포함 가능

▽ 승계자는 읍·면·동에 승계처리 요구 전까지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를 완료

▽ 직전 연도 또는 지급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승계사유 발생으로 인한 승계처리

- [직전 기본직불 지급 ~ 신청·접수 전]에 승계 사유 발생이 된 경우 기본직불 신청·접수 전 농업경영정보를 수정하고 승계대상자로 접수

* 그러나 기본직불 신청접수 당해 연도 이후에 승계('23년 승계사유 발생 → '24년 기본직불 미승계 및 미신청 → '25년 기본직불 신청)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규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

- [기본직불 등록 ~ 지급전]에 기본직불을 등록한 자가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존 기본직불 등록정보 변경

▽ 지급대상자가 소농직불을 신청·등록하였고, 승계자가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소농직불승계 인정

* 그러나, 지급대상자가 면적직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승계자는 소농직불 자격요건 충족 여부 관계없이 면적직불로 승계

▽ 승계자는 농외소득, 주업요건 등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

▽ 상속 등에 따른 승계자인 경우 지급대상 농지는 상속된 지분만큼만 인정하고, 상속되지 아니한 지분은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

▽ 기본직불 등록자가 사망하였으나 승계자가 없거나 승계자격 요건이 맞지 아니할 경우 당해 연도 직불금 미지급

⑤ '04.12.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「농어촌공사법」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

▽ (농업인) (공통)농지면적 10천㎡ 이상(휴경면적은 제외)에서 ▽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▽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

▽ (농업법인) (공통)농지면적 50천㎡ 이상(휴경면적은 제외)에서 ▽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▽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500만원 이상

다. 다만,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은 지급대상 농업인등에서 제외

① 등록연도에 농업에 이용(폐경 및 휴경면적 제외)하는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1천㎡ 미만인 농업인등

② 등록신청 직전 연도 '농업외종합소득금액'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

* 「소득세법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「통계법」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·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"농업(01) 및 임업(02)"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(농업인만 적용)

③ 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「농업농촌공익직불법」 시행령 제5조에 따른 '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'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농업인등

④ 「농업농촌공익직불법」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농업인등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등록 또는 수령한 농업인등

⑤ 「농업농촌공익직불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등 또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을 받은 농업인등

*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은 개월 수가 아닌 연단위로 반영

⑥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79조에 따라 농식품부 재정사업의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 제한을 3회 이상 받은 농업인등

⑦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35조제6항제3호에 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,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농업인등

⑧ 기본직불 등록한 농업인 중 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(9.30일 이전) 이전에 농업 경영체를 등록 취소한 농업인등

☑ “영농종사”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(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, 휴경을 포함)하는 것(법 제2조제7호)

☑ 「농지법」 제9조에 따라 농지 전부를 위탁경영*하는 경우에는 기본 직불의 영농종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급대상자에서 제외

* 「병역법」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,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, 질병·취학·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,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, 교도소·구치소·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,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등

1 (경영체 증빙) 농업인 자격요건(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) → 농업경영체에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1천㎡ 이상이고, 해당 연도에 90일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

▽ 신규대상자 검증과정에서 전년도에 1년 중 연속해서 3개월 미만의 등록자는 영농종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

▽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은 충족하나 농지 전부를 위탁경영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

2 (농자재 구매내역) 자경 또는 임치농업인은 농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 또는 일용직 고용, 농자재*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

* 농약, 비료, 종자(종묘), 멀칭비닐, 면세유 구입 등

▽ 농협 등의 최근 3년간 농자재구매 이력을 우선 검증하고

▽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품목과 관련 지출서류 또는 영농일지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영농종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

3 (수입증빙)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·가공 수입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

▽ 경영체에 등록된 품목과 관련 판매내역 등 수입증빙자료 증빙하지 아니한 경우 영농종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

* 친환경·RPC·로컬푸드·수출단지 등 농산물 공급계약서,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(농협, 행정기관),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 판매대금 입금 내용,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및 거래명세 등

☑ 실경작 여부는 ① 경영체 증빙 + (② 농자재구매 영수증 또는 ③ 수입증빙)으로 간접적으로 증빙하되

☑ 신규등록자, 관외경작자, 타 보조사업 불일치자,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(1~인지지원등급), 농자재 구매이력이 없는 자 등을 중심으로 점검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장점검 추진

참고 4 신규대상자 자격요건 확인

☑ 신규대상 농업인등은 직전 3년 중 1년 이상(자격요건 검증은 직전년도 기준) 지급대상 농지 1천㎡ 이상을 영농종사하고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

(1) 농업인은 1천㎡ 이상(농업법인은 50천㎡ 이상) 농지에서 영농종사

* 농업인은 직전년도 지급대상 농지 1천㎡ 이상(필수)에서 영농종사하여야 하나, 농업법인은 직전년도 지급대상 농지 1천㎡ 이상(필수) + 타 농지 49천㎡ 이상 = 50천㎡ 이상

(2) 농업인이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(농업법인은 4,500만원) 이상

1 (농업인) 등록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㎡ 이상(휴경, 폐경 제외)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

▽ (농업경영체) 농업경영체에 직전 연도(최소 3개월 이상)부터 등록신청 연도까지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 1천㎡ 이상을 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

*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 1천㎡ 이상은 직전년도 타인이 직불금 지급 이력이 없어야 함

▽ (영농종사) (1) 현재 시점 '경작사실확인서'를 통해 실경작 여부 증빙,
(2) 최근 3년간 농자재 구매내역을 검증(참고 3)

(1) 신규대상자는 농지소재지 이·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(총 3인 이상)으로부터 '경작사실확인서'를 발급받아 읍·면·동에 제출(3~6월 이전, 필수)

☞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서류를 작성·제출이 확인된 경우 등록취소 또는 등록제한 등 행정처분

(2) 최근 3년간 농자재 구매이력을 시스템 검증하고 구매이력이 없는 경우 실경작 여부 관련 현장조사 실시

▽ (농지분할)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농지 분할이 아님을 확인

* (1) 농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를 임대차하여 분할한 경우, (2) 「농지법」,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법」 등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재임대하는 경우 (3) 농업법인 소유농지를 다수의 농업인이 임차하여 신청하는 경우

2 (농업법인) 등록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㎡ 이상(휴경, 폐경 제외) 및 타 농지 49천㎡ 이상(합 50천㎡ 이상)이고 상기의 요건을 충족

참고 5 농촌지역 (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 등)

①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(정의)

5. “농촌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

가. 읍·면의 지역

나.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, 농업 관련 산업,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

②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[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-171호, 2015. 12. 23.]

1.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제2호나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·상업·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

2.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.)의 지역 중 동지역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

가.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·보전녹지지역

나. 관리지역 중 생산·보전관리지역

다. 농림·자연환경보전지역

3.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.8.14.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1호나목(1)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(다만,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.)

구분	용도지역	기초자치단체				거주지 기준 농촌·도시지역 구분
		시의 '동'		자치구의 '동'		
동	도시지역	주거지역		주거지역	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text-align: center;">농촌지역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text-align: center;">도시지역</div>
		상업지역		상업지역		
		공업지역		공업지역		
		녹지지역	생산녹지	녹지지역	생산녹지	
			보전녹지		보전녹지	
			자연녹지		자연녹지	
	관리지역	보전관리지역		보전관리지역		
		생산관리지역		생산관리지역		
		계획관리지역		계획관리지역		
	농림지역				* 주소지를 기준으로 국토부 토지이용계획의 용도지역을 참고하여 시스템 검증	
자연환경보전지역						
읍면	전체지역					

③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70조제2항 도시시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.

참고 6

‘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’의 자격요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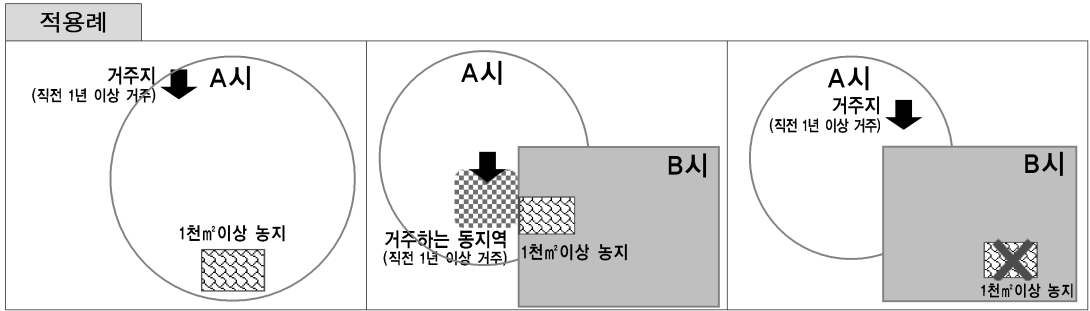
- ☑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서 정한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다음 ‘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’ 요건(①,②,③)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
 - * 예외 : (정책대상자) 후계농업경영인, 전업농업인, 전업농육성대상자,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
- ☑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더라도 ‘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

* 구 :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(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)를 의미
 * 해당 시·구 : 등록신청 당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·구를 의미
 * 연접한 읍·면·동 : 원칙적으로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 규정에 따른 행정면·행정동(농업인에게 유리한 경우 법정면·동 적용)

- ※ “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”의 자격요건에서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중 **영농에 이용하는 농지***. 다만,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 1천㎡(폐경 및 휴경제외) 이상은 있어야 함
 - *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니어도 되지만, 농지의 자격요건(농지전용, 임야 등 제외)은 충족하여야 하고 검증 대상 농업인이 직접 실경작하는 농지

① (농지소재지 = 주거지 주소)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*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·구에 두고 해당 시·구에 소재한 1천㎡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(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·군·구 중 연접한 읍·면·동 내의 농지 포함)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

- * 등록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기준 : 직전년도 1.1일 ~ 등록연도 9.30일까지로 적용
- ** 질병의 치료·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(3개월 이내)는 당초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



- ② (농지소재지 ≠ 주거지 주소) 같은 시(세종자치시 및 제주도 행정시를 포함)·군·구 (연접 시·군·구 포함)에 소재하는 1만㎡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같은 시·군·구(연접 시·군·구 포함)에 소재하는 5만㎡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법인
- ③ ‘지급대상 농업인등’의 자격요건에 충족하고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

참고 7 기본직불 자격 유지기간 등

☑ 기본직불 신청자는 자격요건을 유지하면서 지급대상 농지에서 9.30일까지 지속해서 영농종사를 해야 함 → 농업경영체를 유지하고 현장조사결과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기본직불 지급대상자로 확정 예정

□ (자격요건) 법에서 정한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에서 영농종사 등에 대해서는 **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을 참고하여 결정**

▽ 단순히 경영체에 등록된 기간은 의미가 없고, 타인이 직불을 지급받지 않은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가 경영체에 등록된 기간으로 판정

경영체 등록기간

경영체 유지기간

구 분	2022년도	2023년도	2024년도	2025년도		
				접수	9.30	지급
지급대상자 등록대상(예시)	[경영체 등록기간]				유지기간	
		[경영체 등록기간]		[경영체 등록기간]	유지기간	
지급대상자 등록거부(예시)			[경영체 등록기간]			
			[경영체 등록기간]	[경영체 등록기간]		
				[경영체 등록기간]		
		[경영체 등록기간]				
		[경영체 등록기간]			[경영체 등록기간]	
농업의소득 검증대상			직전년도 소득		검증	
소농자격요건 영농종사 연속 3년	[소농자격요건]				유지기간	
소농자격요건 농촌거주 연속 3년	[소농자격요건]				유지기간	

3 소농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

가.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기본직불 등록자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농가 단위로 소농직불금(130만원) 지급

- ① (소농직불대상 농지요건)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∇ 1천~5천 m^2 범위이거나, ∇ 5천 m^2 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 130만원 미만(이하 '역전구간')
- ② (농촌거주)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
 ∇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내인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직전 주소 등을 검토하여 농촌거주기간 연속 3년 유지 여부 확인
*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농촌에 있어야 인정. 다만, 요양병원 입원으로 인한 주소지 변경이 아닌 질병의 치료·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시로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(3개월 이내) 그 기간에 한해서는 농촌에 거주한 것으로 봄
- ③ (영농종사)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
* (1) 농업경영체에 지급대상 농지 0.1ha 이상의 농지를 연속해서 직전 3년 이상 등록한 경우 또는 (2) 직전 3년 연속 직불금 수령
- ④ (농업인 소득검증)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
- ⑤ (농가 소득검증) 농가 모든 구성원(비농업인 포함)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합이 4500만원 미만
- ⑥ (농지소유) 농가 모든 구성원(비농업인 포함)이 소유한 농지 면적합(지목이 전·답·과수원(지급대상+비지급대상), 임야·대지 등 기타 지목의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모두)이 15.5천 m^2 미만
 ∇ 검증결과 농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중 공동소유 또는 중중 농지, 지목은 전·답·과수원이나 개발이 완료되어 농지로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 등은 농업인이 읍면동 직불담당자에게 소명
- ⑦ (축산업소득)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합이 5600만원 미만
- ⑧ (시설재배업소득)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소득합이 3800만원 미만

참고 9**소농직불 신청·접수과정에서 농가 구성원 관련**

☑ 소농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가는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(시행규칙 별지 제2호)의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*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(원칙)

* ④-1 주민등록상 세대원, ④-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 구성원

☑ 개인정보 공동이용(Mydata) 구축·운영에 따라 (1) 주민등록등본, (2)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서류에서 제외하되, Mydata를 활용을 위해 가족 중 1인의 성명은 신청서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농업인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제출받을 수 있다.

* 다만, 본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대상은 반드시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며, 시스템을 통한 정보열람을 자제하여야 한다.

** 본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에 서명한 대상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정보열람이 가능하다.

1 (1단계) 신청·접수일 기준으로 ④-1에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및 ④-2에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구성원은 G4C 및 개인정보 공동이용(MyData) 활용

▽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같으나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(사례 : 1층 부모님, 2층 결혼한 자녀의 가족)하고 있는 경우 각각 독립세대로 인정

* 이 경우 1층 부모님과, 2층 결혼한 자녀의 가족 구분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분리

2 (2단계)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있지 아니하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 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④-2에 포함

▽ (1) 배우자, (2)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, (3)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

▽ 가족관계증명서에서 결혼한 자녀 및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상인 자녀는 ④-2에서 제외

3 (3단계) 농식품부 주관 소농직불금 등록자 대상 가족관계 인적정보 검증

▽ 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(9.30일) 직전 농가 구성원이 각각 소농직불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모두 면적직불로 전환

4 (4단계) 기본직불 등록 후 소농 자격요건 관련 시스템을 통한 농가 구성원의 농지 소유면적합, 농업외종합소득 등 기타 자격요건 검증

주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☛ 소농직불금을 신청하는 농가 구성원은 구성원 모두 “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”와 “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·활용 동의”에 모두 동의해야 함 → 미동의시 면적직불 전환 ☛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을 거부한 경우는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에서 제외 ☛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고의로 미등록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지급제한 처분
----	--

☑ 기본직불 소농직불 또는 면적직불 등록 및 자격 검증을 통하여 직불유형을 변경할 수 있으나 등록 이후 면적 → 소농 변경은 제한

1 (소농직불) 동일 농가 구성원의 경영체분리등록 등을 고려하여 농가 단위로 지급대상자,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

(A/B, C/D는 부부관계)

사 례	구성형태	지급대상자 자격요건	지급대상 농지	검증대상
Case 1 동일 경영체 등록된 경우	A(경영주)	충족	3,000㎡	▶ A(지급대상자)의 지급대상 농지 3천㎡에 대하여 신청 가능
	B(경영주외)	미충족		
Case 2 다른 경영체 등록된 경우	C(경영주)	충족	3,000㎡	▶ C(지급대상자) 및 D(지급대상자)의 지급대상 농지 5천㎡에 대해 신청 가능
	D(경영주)	충족	2,000㎡	

- * Case 1에 대해서는 소농직불 지급대상자 A에 대한 소농자격요건 검증
- * Case 2에 대해서는 소농직불 지급대상자 C, D 각각에 대한 소농자격요건 검증

- ▽ A가 사망 등으로 승계사유가 발생되어 B가 승계를 받을 경우 B에 대하여 소농자격요건 검증 후 충족할 경우 소농직불금 지급
- ▽ 소농직불은 C, D 중 1인만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C, D가 각각 소농직불 또는 소농 및 면적직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모두 면적직불로 전환
 - * 다만, 고의로 행정을 기망하여 신청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부정수급자로 처리 가능
 - * 아울러, 소농신청은 C, D 중 1인이 등록된 지급대상농지 전체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농업경영체를 통합하여 신청(그렇지 않았으면 면적으로 전환)

2 (면적직불) 경영체 분리등록 여부 상관없이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이 충족한 경우 모두 면적직불 신청 가능

사 례	구성형태	지급대상자 자격요건	지급대상 농지	검증대상
Case 1 동일 경영체 등록된 경우	A(경영주)	충족	3,000㎡	▶ A, B 각각 면적직불 신청 가능 * 다만, 직전년도 각각 면적직불금 지급을 받은 경우에 한함
	B(경영주외)	충족	10,000㎡	
Case 2 동일 경영체 등록된 경우	A(경영주)	충족	3,000㎡	▶ A가 지급대상 농지 13천㎡에 면적직불 신청 가능
	B(경영주외)	미충족	10,000㎡	
Case 3 다른 경영체 등록된 경우	C(경영주)	충족	3,000㎡	▶ C, D 모두 각각 면적직불 신청 가능
	D(경영주)	충족	10,000㎡	

- ▽ Case 1의 경우 만일 A가 직전 연도 13천㎡에 대하여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, 등록연도 3천㎡만 신청하였을 경우 나머지 10천㎡ 농지에 대하여 매매, 임대차종료, 정당한 임대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 등록거부 또는 지급제한

4 지급단가

가.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이 충족한 경우 기본적으로 기준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 ‘면적직불금’ 지급

- ① 자격요건, 현장 확인 등 검증된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을 기준으로 면적 구간별, 진흥지역/비진흥지역, 논/밭을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로 지급

〈 면적직접직불금 지급단가 〉

(단위 : 만원/ha)

단계 \ 구간	면적직불금		
	2ha이하	2ha초과~6ha이하	6ha초과~
논·밭 진흥지역(a)	215	207	198
논 비진흥지역(b)	187	179	170
밭 비진흥지역(c)	150	143	136

- ② (지급상한) 농업인 30ha, 농업법인 50, 공동농업경영체* 농업법인(들녘경영체) 400

* 「농어업경영체육성법」 제27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농업법인. 이 경우 공동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하여 농업인 30ha, 농업법인 50ha를 적용

▽ 다만, 2019년에 종전의 쌀고정, 밭고정,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(논+밭) 면적의 합이 지급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을 인정

- ③ (논·밭 구분) 지목 관계없이 과거 기준연도 이용 형태로 지급

* ▽ 쌀직불 지원받던 농지는 논, ▽ 밭직불·조건불리 지원받던 농지는 밭으로 적용

- ④ (진흥·비진흥 구분)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(KRAS)에 등재된 정보로 확정

〈 적용예 〉

- ◆ 구간별 단가는 가 → 나 → 다 순서로, 합산 면적 이후부터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
 가. 논·밭 진흥지역 : 면적에 따라 해당하는 구간별 단가를 가장 먼저 적용
 나. 논 비진흥 : ‘가’의 면적 이후부터 해당하는 구간별 단가를 적용
 다. 밭 비진흥 : ‘가’ 또는 ‘나’ 합산 면적 이후부터 해당하는 구간별 단가를 적용
- ◆ (예시) 논·밭 진흥지역 면적 4ha, 논 비진흥 면적 3ha, 밭 비진흥 면적 2ha인 경우
 ⇒ 1,644만원(지급금액) = (논·밭 진흥지역 844) + (논 비진흥 528) + (밭 비진흥 272)

(단위 : 만원/ha)

구분	1구간	2구간	3구간	금액 합계
논·밭 진흥 4ha	2ha×215=430	2ha×207=414		844
논 비진흥 3ha		2ha×179=358	1ha×170=170	528
밭 비진흥 2ha			2ha×136=272	272

가.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기본직불금 신청·등록 농업인들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 가능(법 제13조)

*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 후 추진

나. 재배면적 조정의무는 필요할 경우 농식품부 주관으로 발동되는 준수사항이며,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조정 대상인 경우 해당 농지는 품목전환 또는 휴경을 하여야 함 →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에는 포함

① 농식품부 품목과는 농산물의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경우 생산자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 수립

* 다만, 미곡의 경우에는 「양곡관리법」 제16조의2에 따름

▽ 국내 수급상황, 수출입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대상 작목선정, 조정면적 규모 등을 정하며, 필요할 경우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에 자문

② 농식품부 품목과는 결정 사항을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수행할 자조금단체, 생산자단체,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, 공익직불정책과, 경영체 담당과에 통지

▽ 공익직불정책과는 해당 품목을 고시 또는 지침에 반영하여 통지

▽ 농업경영체 담당과에서는 해당 품목 재배 농가의 정보를 품목과 등에 제공

* 경영체 담당과는 매년 4월(하계작물), 10월(동계작물)에 농업경영체 품목 정보 변경 추진

▽ 각 지자체 품목 담당부서에서는 직불금 담당부서,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공익직불금을 신청·등록한 농업인 대상으로 교육·홍보 등 추진

* 생산자단체는 자조금사업 등을 활용하여 별도 홍보, 대책 마련 등 병행

③ 각 지자체 품목 담당부서에서는 직불금 담당부서,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공익직불금 신청·등록 농업인들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통지서 송부

▽ 대상 작목, 재배면적 조정 면적 및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

④ 지자체 품목 담당부서는 생산자단체, 농관원과 협조하여 재배면적 조정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, 이행점검 추진

▽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농업인의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대상 농지에 한정하여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(법 제13조제2항 및 시행령 별표4)

가. 기본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,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%를 감액하여 지급

- * 여러 건의 준수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 준수의무에 해당하는 감액비율을 합산(최대 100%)
- * 동일 의무사항을 차년도에 반복 위반할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 적용(최대 40%)

※ 세부내용은 본 지침서 '제2장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침' 참고

①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(법 제12조제1호 및 시행령 제12조)

- ▽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·관리(폐경면적(불경지 등) 지급제외 + 10% 감액)
- ▽ 농지의 기능을 유지하는 활동 시행(10% 감액)

- ▶ 농작물을 재배하거나, 휴경하는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
- ▶ 이웃 농지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
- ▶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은 주변의 용수로·배수로를 유지·관리할 것

② 농약의 안전사용·잔류허용기준 준수(법 제12조제2호 및 시행령 제13조)

- ▽ 「농약관리법」 제23조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할 것
 - * 국내 미등록 농약(밀수농약), 등록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난 농약(폐기농약)이 검출되었으면 잔류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
- ▽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61조 및 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에 따른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농산물에 대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할 것

③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(법 제12조제4호 및 시행령 제15조, 시행령 별표 3)

- ▽ 이산화황 등 기타 유해물질의 임의사용으로 인하여 「식품위생법」 제7조(식품의 기준 및 규격)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
 - * 다만, 중금속, 방사능, 독소류(유해미생물, 바이러스) 등의 비의도적 오염으로 「식품위생법」에서 정한 잔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

④ 비료 사용기준 준수(법 제12조제2호 및 시행령 제13조)

- ▽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을 준수할 것
- ▽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비료량 기준을 준수할 것

⑤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(법 제12조제3호 및 시행령 제14조)

- ▽ 농업인은 매년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 전(9.30)까지 농관원, 지자체, 농진청, 민간 등이 주관하는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
- ▽ 고령 농업인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별도의 방법을 정하여 교육 추진

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신고(법 제12조제4호 및 시행령 제15조)

- ▽ 「농어업경영체육성법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*를 변경이 발생한 시점 이후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할 것

* (1) 농업인 또는 법인의 성명(명칭), 주소, 전화번호, (2) 농지 소재지, 면적, 경영형태, 재배품목(마늘, 양파, 감귤, 벼, 사과, 배, 포도, 무, 배추 등), 시설현황

⑦ 지급대상 농지 등 및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을 「폐기물관리법」 제8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(법 제12조제4호 및 시행령 제15조, 시행령 별표 3)

- ▶ 영농폐기물을 임의로 방치하지 않고 마을 공동수거함 등에 보관하여 농지등과 그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할 것
- ▶ 영농폐기물, 생활폐기물 등을 농지에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않을 것
- ▶ 시·군·구 : 마을에서 모아둔 폐기물을 마을순회 회수차 등을 운영하여 수거
- * 지정된 이외의 장소에서 소각, 투기 등을 하지 않도록 교육·홍보 강화

⑧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(⑦동일 조항)

- ▶ 식량의 안정적 공급,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, 생태계의 보전 또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과 관련한 마을 공동활동*에 참여할 것
- * ▽ 마을 주변 영농·생활폐기물 공동 수거·처리 ▽ 마을공동공간 청소·정비·경관개선
▽ 생태교란 동·식물 제거 ▽ 농경문화의 계승을 위한 공동체 활동 ▽ 지자체, 마을 자율 조직 등이 운영·개최하는 마을축제, 농업기술교육, 문화활동 등 공동행사

⑨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(⑦동일 조항)

- ▶ 영농활동과 관련된 (1) 종자(종묘)·농약·비료 구매내역, 사용내역 등(영수증 포함) (2) 경운 일자 (3) 수확·판매 등 기타 영농활동 등을 재배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할 것
- ▶ 농관원 등 관계기관에서 기본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, 부적합 발생시 농약·비료 구매·사용기록을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시 협조할 것

⑩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(⑦동일 조항)

- ▽ 「비료관리법」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비료를 적정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것